

울산지방법원 2023. 8. 22 선고 2022가단1115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

담당변호사 김형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아영, 이채영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

담당변호사 김태석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현

변 론 종 결 2023. 7. 11.

판 결 선 고 2023. 8. 22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10. 체결된 매매예약을 51,579,2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,579,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E(이하 ‘E은행’이라 한다)은 D과 아래 표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15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.

							(단위:원)
채권번호	대출일자	대출과목	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연체이자율	연체이자	비고
F	2017-03-10	가계일반자금대출	915,000,000	445,854,098	7.12	51,284,952	

나. E은행은 2019. 3. 7. G 주식회사와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, 원고는 2019. 3. 28. G 주식회사로부터 위 2019. 3. 7.자 자산양수도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.

다. D은 2018. 12. 11.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12. 10.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, 피고 B은 2019. 12. 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4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리고 피고 C은 2020. 11. 3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1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D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전득자인 피고 C 또한 위 전득행위 당시 아버지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

나. 판단

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를 본다.

살피건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, 을 2, 3, 14, 15, 16호증의 각 기재,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D은 매매예약 체결 당시 울산 울주군 H 소재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1,460,139,360원,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90,000,000원 합계 1,650,139,36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사실, D의 소극재산(채무)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,175,000,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.

- ① E은행 : 900,000,000원 (2018. 12. 10. 기준)
- ② I조합 : 133,000,000원 (근저당 2015. 9. 25.)
- ③ 울산신용보증재단 : 15,000,000원 (가압류 2019. 1. 14.)
- ④ 울산신용보증재단 : 27,000,000원 (가압류 2019. 3. 13.)
- ⑤ 피고 B : 100,000,000원 (근저당 2017. 7. 13.)

따라서,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, D이 무자력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동욱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 건물의 표시

울산광역시 남구 J

[도로명주소] 울산광역시 남구 K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

5층 공동주택

1층 838.90㎡

2층 828.40㎡

3층 828.40㎡

4층 828.40㎡

5층 828.40㎡

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울산광역시 남구 J 대 2630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 L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75.69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군의 비율 : 50분의 1

-끝-

